

## 주요 용어 설명

### 체류외국인

「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」, 「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」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\* 체류 외국인  
(\*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)

### 등록외국인

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

###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거소지 관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

### 장기체류 외국인

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

### 단기체류 외국인

관광,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

### 외국국적동포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

### 불법체류 외국인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

### 결혼이민자

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-2-1(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), F-5-2(결혼이민 영주자격), F-6-1(국민의 배우자) F-6-2(자녀양육), F-6-3(혼인단절) 체류 자격 소지자  
※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(혼인귀화자)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

### 유학생

체류자격 D-2(유학), D-4-1(대학부설어학원연수), D-4-7(외국어연수)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외국인

### 사증발급인정서

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외국인 또는 국내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,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 인정서를 교부하면,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

### 출입국자 통계

일정기간동안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모든 내·외국인의  
누계로 유량(Flow) 통계(1명이 수회 출·입국한 경우,  
출·입국 횟수 만큼 출·입국자 수에 포함)

### 체류외국인 통계

기준시점(월말, 연말)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 
외국인의 수를 나타내는 저장(Stock) 통계

※ 등록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, 단기체류 외국인  
등 체류외국인 통계는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모두 포함한  
수치임

### 귀화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 
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 
방식

### 국적회복

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 
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

### 혼인귀화

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간이한 방식으로  
귀화하는 방식

### 국적이탈

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 
선택하는 방식

### 국적상실

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 
등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

### 난민

인종, 종교, 국적,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 
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 
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 
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 
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 
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 
무국적자인 외국인

### 난민인정자

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

### 인도적체류자

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 
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 
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 
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